

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

□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

19세 미만인 자(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)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**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**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**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**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

- 신청대상
 - 보호자(일반적으로 부모)와 함께 거주하다가 통학을 위해 재학 중인 학교 근처로 주소를 이전한 **건강보험 지역가입자**(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제외)
- 신청방법 :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
 - 구비서류
 - 재학증명서(수료증명서는 불가)
 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제출방법 : 방문, 팩스
- 문의 : 1577-1000

□ 주의사항

- 재학생 본인과 보호자(일반적으로 부모)가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.
- 기혼자는 추가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
-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,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, 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, 평생교육원, 전산원 재학생은 추가증 대상이 아닙니다.
- 추가증 신청을 통해 합가하려는 세대의 세대주가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, 세대주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휴학생의 경우에도 2년까지는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(일반휴학 및 군휴학 모두 가능).
 - ※ 다만, 재학 당시에 **학교 근처로 전입하였던 이력이 있어야만 휴학기간에도 추가증 인정이 가능합니다.**
- 학교 관계자가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「추가증 일괄신청서」를 제출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공단 전산 확인 등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가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**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가 추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**